달라지는 시책	이전의 내용	새롭게 달라지는 내용	문의처
환경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 등을 관리하는 기관 변경	환경오염방지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	환경부장관에서→**시·도지사로 변경** (7.1 시행)	환경경제과 02-2110-6682
친환경상품 보급 확대	공공기관은 환경마크 상품과 재활용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(자율구매)	**의무구매** - 공공기관은 친환경 상품을 의무구매하고 구매실적 을 공표해야 함 (7.1 시행)	환경경제과 02-2110-6678
측정대행업 및 방지 시설업 등록 및 취소 업무	환경부장관 유역(지방)환경청	시·도로 이양	환경기술과 02-2110-6725
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(핵심·완충구역) 및 행위 제한	신 설	**핵심구역에서의 행위제한** -국방·군사시설, 공용·공공용 시설, 자연환경보전시설, 기타 지역주민생활과 관련된 시설 등을 제외한 여타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**완충구역에서의 행위제한** - 핵심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, 수목원·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,일정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 증·개축 등을 제외한 시설 설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('05. 하반기부터 시행)	자연정책과 02-2110-6739
섬지역 자연공원에 거주하는 주민의 개인묘지 설치 허용지역 확대	자연공원 자연취락 지구에 도서지역 거주민의 장사를 위한 개인묘지 설치	섬지역 자연공원 자연환경지구 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 우 개인묘지 설치 허용 (10.1일 시행)	자연자원과 02-2110-6752
사전환경성검토 강화	신 설	관리지역내 공장설립을 승인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 의무화 (7월부터 시행 예정) 도시내 자연녹지 지역에서 1만 ㎡ 이상의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사전환경성검토 강화 (7월부터 시행 예정)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은 '공공투자관리센터' 타당성 검토시 사전환경성검토 강화 (10월부터 시행 예정)	국토환경보전과 02-2110-6706
환경친화형 페인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설정	신 설	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페인트를 공급·판매할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(VOCs)의 함유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(7.1일 시행)	대기총량제도과 02-2110-7932
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확대	서울,인천, 경기, 대구	기장군을 제외한 부산광역시까지 확대 (7.1일 시행)	교통환경관리과 02-2110-6858
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확대	부산,대구시	낙동강수계 시지역, 금강 및 영산강 수계의 광역시·시지역 중 목표수질 초과지역 (8.1일 시행)	유역제도과 02-2110-6837
토양정화업 등록	신 설	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일정한 시설,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 (7.1일 시행)	토양지하수과 02-2110-6765
오염토양의 위해성 평가 제도	신 설	토양오염 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해 지자체가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 위해성을 평가해 정화범위와 시기를 조정 (7.1일 시행)	토양지하수과 02-2110-6765
토양오염신고제도	신 설	토양오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토양오염물질을 누출하거나 유출한 때는 지자체에 신고(7.1일 시행)	토양지하수과 02-2110-6765
오염토양의 투기 금지	신 설	오염토양의 투기 및 정화과정에서 누출·유출행위 금지 (7.1일 시행)	토양지하수과 02-2110-6765
간이상수도 인가권한 변경	간이상수도 설치와 폐지시 시·도지사가 승인	시·도지사 승인없이 설치주체인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·폐지 가능 (10월부터 시행)	수도정책과 02-2110-6875
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미설치시 이행명령 주체 변경	중수도 설치 혹은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물의 건축주·사업자가 의무 미이행시 환경부장관 및 시·도지사가 이행명령	이행명령권자가 환경부장관 및 시·도지사	수도정책과 02-2110-6875
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권의 지방이양	지방자치단체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유역(지방)환경청장의 인가를 받음	시·도지사는 인가없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 (10월 1일 시행)	생활하수과 02-2110-6899